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28,234,230	33,847,027
일반회계	865,729,005	25,971,870
특별회계	262,505,225	7,875,157
공기업특별회계	186,087,551	5,582,62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0,613,000	2,418,3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492,470	1,484,77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982,081	1,679,462
기타특별회계	76,417,674	2,292,530
주택사업특별회계	3,594,003	107,82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002,596	90,07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000	3,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582,452	107,474
교통사업특별회계	13,325,338	399,76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1,171,977	935,15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1,641,308	649,23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89,60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